

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55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6.

발 의 자 : 김태선 · 허종식 · 이학영
한준호 · 어기구 · 민병덕
김남국 · 한민수 · 김주영
박 정 · 허 영 · 김영환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생물다양성협약(CBD) 등 국제 사회는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각 당사국이 국가 차원의 생태계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국가 정책 및 의사결정에 통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

특히,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채택된 ‘쿤밍-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(GBF)’는 생태계의 가치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.

그러나 현행법은 생물다양성 조사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관한 임의 규정을 두고 있어 정기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.

이에 국가 생태계 및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5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태계의 현황과 변화

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에 환류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(안 제9조).

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 제목“(생물다양성 조사 등)”을“(국가생태계평가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 생태계의 현황, 추세, 전망 등의 조사·분석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(이하 “국가생태계평가”라 한다)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생태계의 변화 양상,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·변경 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생태계평가의 항목·방법·절차 및 그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생물다양성 조사 등) ① <u>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현황과 자연자산(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5호에 따른 자연자산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조사하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9조(국가생태계평가 등) ① 정 <u>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 생태계의 현황, 추세, 전망 등의 조사·분석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(이하 “국가생태계평가”라 한다)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생태계의 변화 양상,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·변경 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국가생태계평가의 항목·방법·절차 및 그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</p>